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Study on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Victims

김재민 (Jae-min Kim)*

Abstract

The key values that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¹ human rights are to be met can be summarized as securing human dignity and criminal justice. Legal theologian claimed that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because human being w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and that the source of all laws should be God. Additionally, they insisted that the decision criteria for what justice is should be obtained from the Bible which has the absolute principles that can be used at any time and any place, rather than relying on the incomplete human rationality. Therefore, they tried to find out the universal principles of legal order in the Bible. As a result of that, their ideas of human autonomy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became the root of modern liberal democracy. Contrarily, humanistic thinkers, who were on modern rationalism, considered human rationality perfect and trusted in the laws which were enacted through it. Unfortunately, the humanistic idealism offered the ideological basis to the emergence of totalitarian and communist states, and it resulted in the va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victims' rights paradigm' which has inherited the legacy of human rights and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improving upon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nation-centric 'witness paradigm' that was built on modern humanism. The new framework should find out and reflect on it the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at can be applied beyond the age and place. In this regard, the legal-theological study on the Bible which is related to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victims shall be further enhanced.

Key Words : criminal victims, human rights, christianity, legal theology, bible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2A01022720)

*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Kyungil University),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dogoodwill@hanmail.net

2017년 12월 28일 접수, 2018년 01월 18일 최종수정, 01월 22일 게재확정

1. 서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그들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가치들의 실현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문제를 국가권력을 강화하거나 비효율적 법집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실효성 없는 명목상의 피해자 권리를 양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Elias, 1986: 231; 김재민, 2012: 251),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확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자의 유죄입증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잘 보장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에 대한 담론은 논자(論者)가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바, 필자는 이 논의를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신학 이론의 힘을 빌려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선 신학이 법이나 인권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학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본 다음, 필자가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라고 제시한 인간존엄 및 형사정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향 이념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들을 현실 속에 실현할 수 있는 실행원리들도 기독교사상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적 접근을 하려는 이유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도 총체적인 해법을 찾기 때문이며, 여러 종교 사상 중에서 기독교사상을 선택하여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유럽과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박은정, 2001: 88-101, 312-316), 그 사상이 유럽 및 미주 지역을 시발로 전개된 인권보호 정책의 철학적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Havermas, 2003: 108-115), 우리나라의 법제 또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최종고, 2001: 241-259).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인간존엄성 보장의 정당성 확보와 형사정의 확보의 판단기준 설정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절대법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과 이 성경에 담긴 법원리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사상에서 발굴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원리들을 형사 사법 법제에 반영해 나간다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촉진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 범죄피해자 인권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접근

1. 법과 신학

범죄피해자 인권은 각 나라의 구체적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범죄피해자 인권 문제를 신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신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학과 신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 *Legal Theology*)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법신학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학문분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부터라고 보고 있다(최종고, 1981: 222-224). 그러나 법을 신학적 관점에서 규범화하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한 역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¹⁾

법을 신학과 연결시킨 가장 오래된 예는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수받아 시행한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사를 자연법 사상에 접목시켰던 바울 또한 대표적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중세시대에는 토마스

1) 여기서 ‘법’이라 함은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일반법’ 혹은 줄여서 단순히 ‘법’이라 칭하기로 하고, 교회가 제정한 교회법,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 기타 성경에서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규율들은 국가의 실정법과 구분하여 ‘성경적 법’이라 칭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법과 신학간의 교감을 다룬 모든 논의들을 법신학 범주에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2)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0절(“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에서

아퀴나스와 같은 교부들이 신학 및 교회법의 한 분야로 법과 신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제정되었던 가톨릭 교회법인 캐논법(Canon Law)은 12세기와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법체계로써 교회법규 외에 형사법, 가족법, 계약법, 재산법 등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이 유럽전역에 확산되면서 세속정부의 법체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김정우, 2010: 18). 16세기에 접어들어 종교개혁자들이 법을 신학적 교리에서 해방시키면서 세속질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입법권이 교회가 아닌 세속정부에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그들은 개인 인격의 양심에 따른 자율성 보장의 논거를 신학에서 찾았고(김철 역, 2016: 101-104) 모든 절대적 진리의 원천을 성경에서 구하였으며 당시 신학에 침투했던 인간이성에 대한 신의와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박문재 역, 2010: 128-129) 결과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반하는 교황이나 세속 통치권에 저항하는 논거를 제공하게 되어 근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권의식의 발아(發芽)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한 자연법에 바탕을 둔 법률에서 비롯된다는 법신학 사상이 영국 청교도 혁명 시기의 시민권 사상 정립이나 미국 정부수립 시기의 자유민주주의 법제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문재 역, 2010:144-147).

서구 법제사를 돌아보면 법의 근본 토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의 준거점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법이란 그저 인간이 상황에 따라 정하거나름이라는 시각이다(홍병룡 역, 2002: 29). 전자는 법 제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써 에릭 볼프(Erik Wolf)라는 독일의 법신학자의 견해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정의를 가르치는 분이며, 법의 제정자(Gesetzgeber)임과 동시에 법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보았다(Wolf, 1948: 35-36; 마태복음 5:17-19; 로마서 3:31). 이는 하나님이 법 제정의 지침을 성경에 계시해 놓았다고 이해한 것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적 사회형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전 세계 법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성경의 여러

그의 자연법 사상을 볼 수 있다.

가지 지시(Weisung) 속에 법의 확고한 기초가 있다고 본 것이다(최종고, 1981: 231-237). 그가 주장한 법 제정에 대한 성경적 지침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첫째, 인간의 의지(지혜)는 한계(Begrenzung)가 있기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법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둘째, 인간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기본질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였다(Wolf, 1972: 97-98)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우주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무신론적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성을 절대시하는 18세기의 합리주의, 법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 법이란 특정 사회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써 어떤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준거점도 없다고 보는 역사학파의 주장들과 연결된다. 하지만 인간이성의 합리성과 무한한 진보를 주장했던 계몽주의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인간존엄성 보장과 역행되는 공포정치를 출현시켰고, 인간이성의 신뢰를 기반으로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도 20세기 마르크스, 레닌,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에 의해 반인권적인 공포의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홍병룡 역, 2002: 30-36). 이는 인간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라 하겠다. 이처럼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이신론(理神論)’적 자연법 사상가들은 인간이성이 완전하다고 보면서 그 이성작용을 통해 제정된 법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를 비롯한 법신학자들은 그러한 사상에 토대를 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 등장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모든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문재 역, 2010: 157-159). 만일 하나님의 권위에 법의 근거를 정하지 않고 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을 우상화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법이 오용, 남용, 악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경의 입법 지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존하는 인류에게 항상 유효하다고 하다고 본 것이다(Wolf, 1948: 93-95).

이처럼 법의 토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학 및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과 인간이성과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나뉘고 있지만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실증주의가 주관적이고 편협한 가치를 반영하는 실정법을 제정할 위험이 있는 반면, 성경적 법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되어지고 발전되어 온 법으로써 보편성과 통시성(通時性)을 갖추었다는 점(이호선, 2014: 118)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질서의 보편적 원리 및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의 방향을 신학, 곧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2. 인권과 신학

인권(human rights)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특정 국가의 실정법과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기에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한다(김도균, 2008: 104). 그러나 이 도덕적 권리가 각 개인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구제제도를 완비한 법적 권리(legal rights)로 전환되지 않으면 도덕적 권리 그 자체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³⁾ 이때 실효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의 내용을 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성되는 법적 권리도 인권의 내용에 포함시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덕적 권리인 인권을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각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간관 및 세계관과 직결되기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인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류역사의 경험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바, 이는 인권법 제정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서구의 인권법 제정 및 운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사상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기원 후 4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입법자로 활동할 때 노예의 보호, 여성의 지위 향상 규정을 로마법에 반영한 점, 8세기 동로마 제국 시대 에클로가(Ecloga) 법전의 서문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발췌한 내용을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정신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의

3)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도덕적 권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UN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이하에서 ‘유엔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또는 ‘UN Declaration’이라 한다)’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제규범일뿐만 아니라,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1991.7.22., 89헌가106관결) 도덕적 권리를 국내 실정법상 실효성 있는 법적 권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권위를 신적 권위에 연결시키고 그 내용으로 성경의 사법정의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한 점, 9세기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앵글로 색슨법을 개정하면서 십계명을 인용함과 동시에 노동자 보호,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벌금제도 창설 등을 규정한 점 등이 그것이다(김정우, 2010: 4).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기독교가 서구의 인권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루터의 저항은 전통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으나 신학에 기초하여 인권사상을 일깨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즉, 성직자도 세속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평등권 사상을 고양한 점,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개혁하여 성직자도 자유로운 혼인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권과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킨 점,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는데 맞서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확립시킨 점 등이 그것이다(김정우, 2011: 235-237).

그 밖에 17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가 ‘법이 곧 왕(Lex Rex)’이라고 하면서 실정법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rancis A. Schaeffer, 1981: 99) 절대 왕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점, 18세기 미국의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신학에 기반 한 법치주의 사상을 계승한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인간의 평등권과 천부인권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하고 초기 미국 정부 구성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점 등이 그것이다(홍병룡 역, 2002: 36-37; Schaeffer, 1981: 31-32). 이 때문에 하버마스(Habermas)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합의되고 있는 인권사상의 기원이 바로 기독교 인권사상이라고 하였으며(Habermas, 2003: 108-115), 이 인권사상을 기초로 서구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그 신학을 세속적으로 해석해 냈던 사상가들이 오늘날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립, 2012: 190). 17세기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의 저항권이나 삼권분립 사상도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이 왕’이라는 책에 담긴 기독교 사상을 세속화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고(Schaeffer, 1981: 105), 1948년 세계인권선언 작성시 개신교 지도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인권존중이라는 신세계 질서 형성을 목표로 이 선언문의 기초 작업에 관여했던 것도⁴⁾ 서구 법제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4) <http://www.pewforum.org/2003/01/27/sources-of-basic-human-rights-ideas-a-christian-perspective/>

말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성의 무한한 진보와 진화를 주장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노선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하기에 공적 영역이자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종교개혁가들과 근대 기독교 법사상가들이 인권사상의 원천을 성경에서 구하게 되면서 그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사상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인권법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인권운동을 펼침으로써 인권에 대한 정치적 성취를 이룩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이성림, 2012: 190-192). 따라서 인권담론을 위한 신학적 접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범죄피해자 인권과 신학

근래에 국내외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들이 개발되고 집행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한 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처럼 아직 미흡한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의식 결핍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범죄피해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감정과 상황에 대한 공감의 부족함 때문이다. 형사사법체계가 구조적으로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인간존엄성 보장에, 후자는 형사정의 확립에 흠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흠결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에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입법자, 법집행자, 법해석자들이 형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가 하면, 범죄피해자를 형사목적 달성을 위해 단순한 증인의 지위에 두도록 하는 형사법규나 형사사법체계가 경찰, 검사, 판사들의 공감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권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서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을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친화적인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발전시켜야 할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신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알빈 디어링(Albin Dearing)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의 적실성을 기준으로 형사사법 패러다임을 증인(witness) 패러다임, 손해(damage) 패러다임, 손상(harm) 패러다임, 권리(rights) 패러다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인 증인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증인 패러다임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방의 틀로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라는 인식의 기초에 서 있다. 범죄피해자는 단지 증거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손해 패러다임과 손상 패러다임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배상과 다각적 손상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강조될 뿐 형사사법의 기본적 구조는 증인 패러다임에 준하고 있다 (Dearing, 2017: 9-17).

위의 증인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확산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민족국가의 등장과 관련성이 깊다. 이 국가주의의 등장 배경에는 개인의 권리보호보다 집단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집단주의(collectivism) 이데올로기의 채택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국가건설의 사상적 기반은 인본주의적 계몽사상가인 루소(Rousseau)의 ‘일반의지론(一般意志論)’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변영하는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개인을 그 특정 프레임에 맞추도록 하면서 그 공동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공동체의 일반의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개인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집단주의적 증인 패러다임 체계이다. 이 패러다임은 개인을 사회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어서 범죄 문제도 개인의 권리침해와 결부시키지 않고 가정(假定) 속에 존재하는, 초월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이익에 결부시키기에 범죄피해자 개인의 인권보장은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Dearing, 2017: 213-217).

이에 반하여 권리 패러다임은 범죄를 범죄피해자 개인의 권리 침해로 파악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심지어 범죄자에 대하여 혐의입증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 내는 것도 피해자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기

에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어엿한 주체가 된다. 국가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레임에서 국가의 중대한 기능 두 가지는 피해자 개인의 인간존엄성 존중과 타인의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책무수행이 된다. 범법자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던 국가의 기능이 범죄피해자 개인의 인권보장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Dearing, 2017: 23-31). 이로 보건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충실을 위해서는 증거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⁵⁾

그렇다면 신학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첫째, 신학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주체로서의 성질을 긍정한다. 즉, 범죄피해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하기에 범죄행위로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1차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피해를 당한 인간은 2차 피해자에 속한다 것이 법신학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상에서 범죄피해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률상 대표자(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기에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한다(North, 1990:16). 둘째, 신학은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의 논거를 제시한다.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범죄피해자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경에는 외국인, 나그네, 고아, 여성, 빈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들이 많다. 범죄피해자도 이러한 약자의 부류에 속한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른 이들과 같이 동등하게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Witte and Alexander, 2010: 220-226). 이러한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앞서 언급한 권리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이 이 핵심가치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5) 다만, 증인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에 대한 신학적 논의

1.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

현재 많은 나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07년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제정, 그리고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등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권 보장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잘 지원한다는 것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증인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권리 패러다임의 기초 위에서 그 성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다. 증인 패러다임 하에서도 인권보장을 외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를 증거의 객체로 보는 한 실질적 인권보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의미는 범죄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뜻임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이 공정하여 피해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마땅히 차지 할 자신의 몫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 보건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형사정의 확보를 왜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지 그 명분을 신학이론과 연계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6) 본 연구에서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다만, 타인의 범죄행위로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자와 그 가족만을 뜻하기에 범죄행위 유발에 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 개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인간의 존엄성 보장

법신학에서는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고(Witte & Alexander, 2010: 171), 하나님으로부터 지력과 의지와 능력, 그리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용희, 1978: 12-13). 아울러 인간은 창조의 순간에 영광과 영예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품위를 부여 받았기에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한다(이기락, 1992: 49-51).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형제적 유대의 가능성도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게 만든다(한용희, 1978: 13). 기독교가 담고 있는 이러한 인간존엄성 사상은 초대교회 이래로 진지한 기독교인들과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지지 되었으며, 18세기 이후 사무엘 러더포드, 존 위더스푼과 같은 크리스찬들에 의해 현대 인권사상으로 꽃을 피우게 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인권사상가들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주장하였다(이상익, 2015: 271). 이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세계를 창조한 후 세계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이성의 무한한 진보를 믿기에 인간과 사회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의 최대의 약점은 절대적 가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 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연결되면서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되었고, 사회적 진화론과 연결되면서 적자(適者)를 확산시키기 위해 약자(弱者)를 축출해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되어 결국 독일 나찌의 국가사회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태시켰다(박문재 역, 2010: 155, 160, 176-180). 이 사상들이 인류의 인권역사에 얼마나 폐해를 끼쳤는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인간이성의 진보를 신뢰하면서 출발했던 사상들이 가장 반인권적,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인간존엄성 사상의 근원지를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

찾을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와 품위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의 위상도 거부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한 것이 된다.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회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보장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형사정의의 확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형사절차상의 정의 실현 문제이다. 형사정의 실현은 형사법제가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형사절차의 진행이 정의롭다는 뜻도 있다. 정의로운 가치를 반영한 법제정은 전자에 해당되고, 형사절차 진행이나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은 후자에 관련된다.

형사정의를 논할 때 무엇이 정의인지 그 정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서양역사에서는 이 판단기준의 정립이 두 갈래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그리이스와 로마시대의 고전철학이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이다(전택부 역, 1976: 21-22). 전자의 경우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이 대표적인바, 그는 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인간이 스스로 확정한 '개별적 법률'과 자연법에 의해서 확정된 '일반적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개별적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을 의미하는데 비해 일반적 법률은 어디서나 똑 같은 힘을 발휘하는 법으로 이해했다(박은정, 2001: 52-53).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인간이성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써 후일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이신론(deism, 理神論)', '자연종교', '합리주의' 사상과 연결된다. 이 합리주의 사상은 정의를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보면서도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의의 이념을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었다(전택부 역, 1976: 22; Wolf, 1948: 11-21). 인간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합리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은 법의 권위에 대한 초월적 근거를 모조리 부정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법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함

으로써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법의 내용이 좌우되어 법치주의가 와해될 수 있기에 보편타당한 정의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박문재 역, 2010: 160; 홍병룡 역, 2002: 40-43). 형사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의에 대한 초월적 표준이 없으면 국가의 여러 제도에 대한 합법성의 표준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정의가 없으면 국가 멋대로 원하는 것을 법으로 선포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신학자들의 사상이었다(전택부 역, 1976: 23). 실제로 법신학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발흥으로 인한 세계대전의 발발(勃發)과 공산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탄압의 역사로 증명되었다.

이와 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결코 인간이성의 자율성만에 의존하거나 인간 역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기초하는 것이며, 그 창조의 기본 질서가 정의와 연관되고, 창조주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 절대적 정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Wolf, 1948: 29). 정의는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법치(法治) 역시 정의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초월적 권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홍병룡 역, 2002: 58-59). 이로 보건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월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매우 건강한 정의관(正義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정의를 판단기준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인종, 나이, 성별,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고통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거부된다면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은 형사정의 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형사정의 없이는 진정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정의를 확보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형사정의를 확보를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로 설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형사정의를 판단기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한 절대법에 의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신학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당한 제도도 절대적 정의의 이념으로 지도할 때 그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택부 역, 1976: 22-25).

IV.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실현

성경 속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 확보에 관한 정당성의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과 집행의 제반 활동을 관통하는 ‘입법원리’ 혹은 ‘집행원리’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총칭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실행원리’라고 부르고자 하는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 확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이 ‘실행원리’ 몇 가지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존엄성 보장 실행원리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범죄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타격은 피해자의 생존기반을 무너지게 하여 경제적 고통을 가하게 되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대인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평온한 생활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공휼사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이 공휼의 마음은 모든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나라를 수 있는 감정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러한 공휼사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면 이방 나그네에 대한 압제와 학대의 금지(출애굽기 22:21-27), 농장에서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행위(레위기 19:9-10),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나누는 행위(신명기 14:29),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구제행위(신명기 15:7-15),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주한 종의 보호(신명기 23:15-16), 가난한 자의 생필품을 전당 잡는 행위 금지(신명기 24:10-13) 등이다.

위의 사례 중 범죄피해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학대 금지 항목이 되겠으나 나머지 항목들도 사회적으로 생존기반이 취약한 자들에 대한 배

려와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4조와⁷⁾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이 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실효적 법적 권리화 할 필요가 있다.⁸⁾

(2) 사회적 편견 타파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parable of a good samaritan)’는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상인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숙소로 데려가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으로써 예수가 제시했던 비유이다.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편견 타파의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사심 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범죄피해자 업무를 다룰 때 피해자의 인종,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거나 사회적 의식·문화·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피해자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Marshall, 2012: 120).

비유 속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했었던 예수는 그 강도 만난 피해자를 유대인으로 상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간에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관계였기에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선행을 한 사마리아 상인을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을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인권보호 영역에서도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의 극복은 매우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3조와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서문 제9조가⁹⁾ 이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7) 유엔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4조는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Dussich & Mundy, 2008: 184).

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는 권리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9)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원 명칭은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서문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는 인종, 피부색, 민족적 출신, 유전

(3) 연민과 공감에 기초한 행동

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연민과 공감의 태도로 피해자 지원을 실천하는 원리 또한 담겨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자기에 대한 유리·불리를 생각하며 ‘자기방어적 경계심(self-protective caution)’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마음(heart)과 감성(feeling)에 기초한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Marshall, 2012: 120).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호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위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피해자 보호에까지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진다는 유대교의 정결예법 때문일 수 있고(강병도, 2011: 110), 예정 되어 있는 예배 의식을 집전해야 할 사정 등이 있어 이 피해자에 연루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기보호적 차원의 경계심이 훨씬 강하였던 것이다.

피해자 인권보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관계자들에게 이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제25조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을 경찰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 및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 들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FRA, 2014: 38),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0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4) 공동체 통합지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엄격하게 말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스토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바로 범죄피해자 ‘원상회복’의 원리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써 ‘공동체체로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이호중, 2009: 7-8; Marshall, 2012: 219). 범죄피해자가

적 특징,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재산, 출생, 장애, 나이, 성, 건강을 비롯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정중하게 인정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06330&uri=CELEX:32012L0029.2017.12.16> 검색).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갈등해결로만 달성하기 어렵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이 약화된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선입견을 통해 타율적으로 소외되거나 이웃을 불신하면서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확신할 수 있으려면 다시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재통합 될 수 있어야 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언급되는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자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는 타락한 아들을 다시 공동체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용서와 관용을 확인시키고 다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재통합될 수 있는 전기 마련의 의미를 지닌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기 어려운 만큼 한 인격체로서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일원으로 재통합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5조의 3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의 형사조정제도 등이 본 원리와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회합(community conferencing) 또는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등의 법제화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 형사정의 확보를 위한 실행원리

(1) 형사절차상 주체적 지위 부여

성경 신명기 19장 12절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도망하게 되면 성읍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피해자의 가족(보수자)에게 넘겨 죽이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범죄사실 규명은 장로들이 하였지만 처벌의 집행을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넘긴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대인적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직접적 1차 피해자는 창조주인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는 하나님을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지상에서 사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North, 1990: 17). 여기서 우리는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

자에게 ‘당사자적 지위’ 혹은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절대국가 성립 이후 형벌권이 국가에 전속되면서 국가를 진정한 피해자로 간주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킨 현상과 대비된다. 근래에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형사절차 참여권을 점차 확장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를 증거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브리넨과 헤겐(Brienen & Hoegen, 2000: 30-31)은 범죄행위가 사회 공공질서 침해행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적 행위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공익수호를 목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적어도 형법상 개인적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소송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써 위 원리의 충실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이승호, 2012: 91-94; 손병현, 2014: 65-73).

(2) 해명기회 부여

성경에는 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억울한 정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해 도피하면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장로들에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세히 호소하도록 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써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 도피자의 의견을 청문했던 장로들의 역할이 오늘날 형사사법 관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때 이러한 해명기회의 박탈은 곧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아 여기서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어떤 가벼운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억울하게도 중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되어

중한 벌을 받게 된다면 그는 가벼운 범죄의 범죄자인 동시에 중대한 국가범죄의 범죄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국가가 형사사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결코 일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뒤지지 않으므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법기관은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명기회 부여의 원리는 위와 같이 이중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래적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도 실효적 권리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행하는 증인 자격의 진술로써 범죄피해자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의견진술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승호, 2012: 97-98). 따라서 이 원리에 충실한 실효적 피해자 권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3) 소송절차의 공정성 확보

형사정의 확보를 위하여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외국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소송절차의 공정성 확보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 기소, 재판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사적 감정을 가지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출애굽기 23:6-9)’,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명기 16:19)’ 등과 같은 구절들이 바로 그것이다.

송사에 대한 공정성의 원리는 비단 재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에 형

사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라 할 것이다.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5조가 범죄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에의 공정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Dussich & Mundy, 2008: 184-185),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본문 제13조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각 피해자 개개인의 사정에 적합하면서도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¹⁰⁾ 바로 이 원리의 반영이라고 볼 것이다.

(4) 손해배상

성경에는 형사정의의 실현을 위한 ‘손해배상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즉, 상대방을 쳐 죽이고자 하였는데 죽지 아니하고 상처가 치료되어 회복된 경우에는 그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의 때까지 드는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고(출애굽기 21:18-19),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을 때 그 남편이 청구한 벌금액을 내도록 하였으며(출애굽기 21:22), 소를 소유한 주인이 평소에 사나운 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주인도 사형에 처해 질 수 있었지만 생명에 대한 속죄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출애굽기 21:30), 소나 양을 도둑질 한 후 그것을 처분했을 경우 피해당한 숫자만큼 계산하여 배상하되 소의 경우 5배, 양의 경우 4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둑질한 것이 아직 범죄자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 그 피해당한 것의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한 것(출애굽기 22:1)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의 배상은 범인이 가지고 있는 고의의 불법성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의 출발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의가 행해진 이후에 사랑이 빛을 발하기는 쉬워도 정의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사랑으로 정의의 흠결을 메우기란 인간세계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은 형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진정한 피해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둬으로써 위 원리를 실정법에 반영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배상명령 평균

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 (2017.12.16검색).

신청건수가 5959.2건, 그 중 인용된 건수는 1837.2건으로써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본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형사법원의 판사가 형사절차 내에서 행해지는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안일한 의식을 갖거나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Dearing, 2017: 346).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활성화 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원리가 충실히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지선·김성언, 2015: 290-291).

V. 결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립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원리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형사정의의 판단기준을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해 구하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계시된 성경에서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그리고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방(攻防)의 틀로 이해하며, 범죄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여기는 전통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증인 페러다임 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취약해 질 위험이 있다. 형사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 우선주의는 근대 절대국가 성립시기에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사상의 뿌리는 인간이성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이상사회(理想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의 이상은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전제정치와 공산주의 정부의 출현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서구 근대사회의 인 권법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경이 법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종교개혁가들과 근대 기독교 법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행위를 개인의 권리침해로 바라보지 아

니하고 공익침해 행위로 바라보는 국가중심적인 ‘증인 패러다임’의 요소들을 아직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들을 반성하면서 기독교사상에 담겨있는 인간존엄성과 형사정의 추구의 유산을 승계해 나갔으면 한다. 범죄행위를 범죄피해자 개인의 권리침해로 인식할 수 있는 ‘권리 패러다임’ 모델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범죄자 인권보호와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줌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과 형사정의를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형사법 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및 실천원리들의 추가적인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한바 앞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신학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병도 (2011). **툼슨Ⅱ 주석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 [Gang, B. D. (2011). *Thompson II Commentary Bible*. Seoul: Kidokgihyesa.]
- 김도균 (2008). **권리의 문법**. 서울: 박영사.
- [Kim, D. G. (2008). *A Grammar of Rights*. Seoul: Pakyoungsa.]
- 김재민 (2012).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241-271.
- [Kim, J. M. (2012). *A Study on Securing the Crime Victims' Real Rights*.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4(3), 241-271.]
- 김정우 (2010). 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소고. - 고전 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4, 19-45.]
- [Kim, J. W.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Legal Tradi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enturies between the Roman law of the postclassical period and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Soonsil Law Review*, 24, 19-45.]
- 김정우 (2011).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대한 일고. -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나타난 헌법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2호, 205-242.
- [Kim, J. W. (2011). A Study on the Protestant Perspectiv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Constitutional Values in Luther's Criticism on the Roman Catholic Canon Law. *Korean Association of IACL*, 17(2), 205-242.]
- 김지선·김성연 (2015).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Kim, J. S., Kim, S. E. (2015). *Directions and Tasks of the Third Basic Pla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김철 역 (2016). **법과 혁명Ⅱ.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 Berman, H. J. (200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서울: 한국학술정보.
- [Kim, C. (2016).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Trans. Berman, H. J. (200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박문재 역 (2010). **기독교 서구관. 프란시스 슈페퍼 전집 V**. Schaeffer, Francis. (1985).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Park, M. J. (2010).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Goyang: Christian Digest. Trans. Schaeffer, Francis. (1985).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Westchester: Crossway Books.]
- 박은정 (2001).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서울: 삼영사.
- [Park, U. J. (2001).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Seoul: Sam Yeong Sa. Trans. Hans Welzel, H. (1990).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 이기락 (199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7, 34-53.
- [Lee, G. R. (1992). A Bibliological Study on Human Dignity.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 34-53.]
- 이상익. (201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한국철학논집**, 45, 266-300.
- [Lee, S. I. (2015).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Dignity.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45, 265-300.]
- 이성림 (2012). 탈-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인권론. **신학과 세계**, (73), 180-219.
- [Lee, S. L. (2012). Christian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the Post-Secular Society. *Theology and The World*, 180-219.]
- 이승호 (2012).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83-104.
- [Lee, S. H. (2012).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Victim's Status in a Criminal Trial.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0(1), 83-104.]
- 이호선 (2014).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신앙과 학문**, 20(1), 103-136.
- [Lee, H. S. (2014). Expanding The Prospects of Modern Jurisprudence Through The Biblical Law. *Shinang-gwa-hakmun*, 20(1), 103-106.]
- 이호중 (2009).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1-27.
- [Lee, H. J. (2009). Restorative Justice Discourses and Practice. *Ewha Law Journal*, 14(2), 1-27.]
- 손병현 (2014).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63-84.

- [Sohn, B. H. (2014). Les caracteres d'une partie au proces penal de lavictimime en Franc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2(2), 63-84.]
- 전택부 역 (1976). **정의, 사회, 질서**. Brunner, E. (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서울: 세계대학봉사회 한국이사회 출판국.
- [Chiun, T. B. (1956).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Seoul: Korean Council of World University Service. Trans. Brunner, E. (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Harper.]
- 최종고 (1981). **법과 종교와 인간**. 서울: 삼영사.
- [Choi, C. G. (1981). *Recht, Religion und Mensch*. Seoul: Sam Yeong Sa.]
- 최종고. (2001). **한국법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Choi, C. G. (2001). *The Legal Thought Histor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한용희 (1978). 인권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8, 1-40.
- [Hahn, Y. H. (1978). A Study on Human Rights - Catholic Position -. *Journa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8, 1-40.]
- 헌법재판소 1991.7.22., 89 헌가 106 판결.
- [Constitutional Court Desion, 89Heonga106 Decided 1991.7.22.]
- 홍병룡 역 (2002).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 Colson, C. (2000). *Justice that Restores*. 서울: IVP.
- [Hong, B. R. (2002). *Justice that Restores*. Seoul: IVP. Trans. Colson, C. (2000). *Justice that Restores*. (2000).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 Brienen, M.E.I. & Hoegen, E.H. (2000). *Victims of crime in 22 European criminal justice systems*. Nijmegen, The Netherlands: Wolf Legal Productions.
- Dearing, A. (2017).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Springer.
- Dussich, P.J. John & Mundy, G. Kieran. (2008).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 Elias, R. (1986). *The Politics of Victim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A. (2014). *Victims of crime in the EU ;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 Havermas, Jürgen. (2003). *The Future of Human Nature*. Oxford: Polity.
- Marshall, C.D. (2012) *Compassionate Justice*. Cascade Books.
- North, Gary. (1990). *Victim's Rights*.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 Schaeffer, Francis. (1981). *A Christian Manifesto*. Crossway.
- Witte, J. & Alexander, F.S. (2010).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 Wolf, E. (1948). *Rechtgedanke und Biblische Weisung*. Furche-Verlag Tübingen.

Wolf, E. (1972) *Rechtstheologische Studien*.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ei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2017.12.16 검색).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 (2017.12.16.검색).

<http://www.pewforum.org/2003/01/27/sources-of-basic-human-rights-ideas-a-christian-perspective/> (2017.12.22.검색).

논문초록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김재민 (경일대학교)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법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형사정의의 판단기준을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해 구하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계시된 성경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성이 완전하다고 보면서 그 이성 작용을 통해 제정한 법을 신뢰하였지만 법신학자들은 모든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법질서의 보편적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였는 바, 성경에 기반 한 그들의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사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 등장 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에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 한 국가중심적인 ‘증인 패러다임’의 흠결들을 반성 하면서 기독교에 담겨있는 인권과 정의의 유산을 승계한 ‘범죄피해자 권리 중심형 패러다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및 실천원 리들의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인 권에 대한 법신학적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인권, 기독교, 법신학, 성경